

# 2023년도 시니어인턴십 안내

★**만60세 이상(1963년 이전 출생)**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 
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**최대 240만원 +a 인건비 지원**★  
“**협회-기업 간 2023년 약정체결 이후 채용자부터 진행 가능,**  
**약정체결일 이후 채용자 소급적용 불가**”

## 1 지원대상

- **기 업** : **만60세 이상**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
  - \* 신청제외 :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사업장 등
- **참여자** : **만60세 이상자 (1963년 이전 출생)**
  - \*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
  - \* 해당기업에 90일 이내 근로이력이 없는 자 (일용직은 예외)
  - \* 참여 직종이 **‘신청제외직종’** (경비, 청소원 산후도우미, 기업 고위임원 등)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- \* 신청제외직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상담 요망

## 2 유형별 지원내용

구 분	참여기업지원금		총 액
	지원구분	지원내용	
일반형 (인턴형)	인턴지원금	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 50% / 월 최대 <b>40만원</b> (예: 월급여 80만원 근로계약 → 40만원 지원)	1인당 <b>240만원</b>
	채용지원금	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, 추가 3개월간 급여 50% / 월 최대 <b>40만원</b>	
세대 통합형	채용지원금	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 상 재고용 / 1인당 <b>300만원(일시금)</b>	1인당 <b>300만원</b>
장기 취업유지형	장기취업 유지지원금	인턴십 참여자를 18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총 4회) * 지원기준일(18·24·30·36개월 경과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* 2022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자부터 적용	-

## 3 문의처

### □ 상담/문의처

- 기업일자리지원팀 박 현 과장 (T. 042-368-9722 E. hyun@diva.or.kr, F. 042-867-9690)